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0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남인순ㆍ이병진ㆍ문진석

백혜련 • 박희승 • 전진숙

김남희・김 윤・민병덕

최기상 · 김원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.

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,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,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7일"을 "14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	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		
전부개정법률	전부개정법률		
제17조(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	제17조(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		
건 등)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	건 등) ①		
따른 입양의 승낙, 제16조제1항			
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			
출생일부터 <u>7일</u> 이 지난 후에	<u>14일</u>		
이루어져야 한다.	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